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51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김정호 · 허종식 · 이연희
신영대 · 임미애 · 윤후덕
윤준병 · 이수진 · 조계원
박해철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

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강화”를 “강화 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2. 재난·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규제
3.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규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 폐지 또는 완화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항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로 본다.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규제의 신설 · <u>강화</u> 에 대한 원칙과 심사 <u><신 설></u>	제2장 규제의 신설 · <u>강화 등에</u> 대한 원칙과 심사 <u>제7조의2(생명 · 안전 · 환경 관련</u> <u>규제의 폐지 · 완화 시의 규제</u> <u>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u>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u> <u>생명 ·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u> <u>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를 폐</u> <u>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u> <u>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u> <u>작성하여야 한다.</u> <u>1.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u> <u>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u> <u>2. 재난 · 사고 및 산업재해의</u> <u>예방 · 대응을 위한 규제</u> <u>3. 자연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u> <u>한 규제</u> <u>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u> <u>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규제</u> <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u> <u>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하거</u>

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 폐지 또는 완화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생략)	<u>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항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로 본다.</u> 제24조(기능)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